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경인식약청 수입검사 월간 뉴스레터

제79호 '25.10.

수입검사관련 정보

◆ 수입식품등 검사지시

구분	품목	주요내용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 강화	가공식품 등	중국산(해외제조업소 CHENGUANG BIOTECH GROUP CO.,LTD) / 마리골드색소(MARIGOLD OLEORESIN) / 확인시험
		프랑스산(해외제조업소 SOFRABRICK) / 건면 / 소브산(Sorbic acid)
		미국산(해외제조업소 ADM RICE, INC.) / 멥쌀(씨앗) / 현장검사(곰팡이발생, 덩어리화, 변패 및 이취 여부 확인 등)
		추석명절 대비 수입식품등 검사 지시 **농산물** (고사리, 고비-납, 카드뮴 / 깐도라지, 깐밤-이산화황 / 목이버섯, 당근-농약 514종), **축산물** (돼지고기-동물용의약품 살부타몰), **수산물** (명태, 참조기, 문어-납, 카드뮴, 수은 / 새우류-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독시사이클린 / 부세-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가공식품** (삶은 고사리 및 고비-납, 카드뮴 / 어육살-보존료 / 식물성유지류-벤조피렌, 산가)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제품-영양성분함량 / EPA 및 DHA 함유유지-EPA 및 DHA의 함, 총산화가 / 엠에스엠-엠에스엠, 비소, 카드뮴 / 뮤코다당단백-뮤코다당단백, 단백질가, 콘드로이친황산 비율 / 프로바이오틱스-프로바이오틱스 수, 붕해시험 / 프로폴리스 제품-총 플라보노이드, 디에틸렌글리콜)
		말레이시아산(해외제조업소 GABAN SPICE MANUFACTURING (M) SDN BHD) / 천연향신료(후추 원료 100%) / 티아메톡삼(Thiamethoxam),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인도산(해외제조업소 B-ONE BUSINESS HOUSE PVT LTD) / 기타 수산물가공품 /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Semicarbazide(SEM) 제외)
		인도산(해외제조업소 CURE NUTRACEUTICAL PVT. LTD.) / 유함유가공품(살균제품) / 안식향산
	농·축·수산물	인도네시아산(해외제조업소 PT. BAHARI MAKMUR SEJATI, ID00000 6093) / 흰다리 새우(처리형태 불문) / 방사능(세슘, 요오드)
		중국산(해외수출업소 QINGDAO NONGFA GREEN FOOD CO.,LTD) / 당근 /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이 달의 보도자료

수입 과·채가공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 베트남산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해 반입 전 세균수 검사결과(적합)를 제출해야만 수입신고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①LEE&KIM COMPANY LIMITED, ②DUNG DAT AGRICULTURE INVESTMENT AND DEVEOPMENT CO.,LTD, ③YEN LINH PRIVATE ENTERPRISE ④MINH KHOI TRADING IMPORT EXPORT CORPORATION, ⑤HANOI GREEN FOODS CO.,LTD ⑥ATL GLOBAL COMPANY LIMITED, ⑦AMEII VIETNAM JOINT STOCK COMPANY

** 과·채가공품 : 과일류, 채소류 또는 버섯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 검사명령이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베트남산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세균수*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과·채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 식품에 존재하는 총 미생물 수를 측정하는 지표로, 가공 위생관리 전반적인 청결 수준과 유통 중 미생물 증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참고로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2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하여 왔다. 오는 **9월 30일부터**는 이번 **베트남산 과·채가공품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운영**된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 현황

담당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손영욱 (043-719-2201)
		담당자	사무관	유행일 (043-719-2210)

붙임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 현황

순번	시행일자	대상식품	국가	검사항목
1	'16.2.29.~'26.2.28.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의 제품	인도	금속성이물
2	'18.10.22.~'25.10.21.	베리류(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방사능 (요오드, 세슘)
3	'19.4.23.~'26.4.22.	능이버섯	러시아 우크라이나	방사능 (요오드, 세슘)
4	'20.10.22.~'25.10.21.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의 제품	중국 (2개 제조업소)	금속성이물
5	'21.3.31.~'26.3.30.	참다랑어 (생식용 수산물)	일본(수출국)	살모넬라
6	'21.10.22.~'25.10.21.	과자 (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 제외)	인도 (4개 제조업소)	세균수
7	'22.3.31.~'26.3.30.	기타소금	파키스탄	불용분
8	'22.12.24.~'25.12.23.	목이버섯(자실체, 건조)	중국	잔류농약 1종 (카벤다짐)
9	'23.3.31.~'26.3.30.	고추(열매)	베트남	잔류농약 8종 (디니코나졸,톨펜피라드, 트리사이클라졸, 퍼메트린, 디메토에이트, 아이소프로티올레인, 메토미노스트로빈, 모노크로토포스)
10	'23.6.30.~'26.6.29	침출차	중국	잔류농약 5종 (피리다벤, 디노테퓨란, 오쏘페닐페놀, 프로클로라즈, 클로르피리포스)
11	'24.3.29.~'26.3.28.	과·채가공품 (비살균 제품)	중국 (2개 제조업소)	대장균

순번	시행일자	대상식품	국가	검사항목
12	'24.6.28.~'26.3.27.	빵류	중국 (4개 제조업소)	보존료
13	'24.9.30.~'26.9.29.	당절임 (밀봉 및 가열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제품은 제외)	베트남 (2개 제조업소)	타르색소
14	'24.12.30.~'25.12.29.	냉동부세	중국	에톡시퀸
15	'25.3.31.~'26.3.30.	불로초	중국	잔류농약 15종 (말라티온, 사이퍼메트린, 사이할로트린, 아세타미프리드, 아세토클로르, 이미다클로포프리드, 이프로디온, 카벤다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트리아조포스, 트리폴록시스트로빈, 펜프로파트린, 포레이트, 프로클로라즈)
16	'25.6.30.~'26.6.29	새우 및 기타 수산물가공품(새우 함유량 30% 이상)	베트남 (3개 제조업소)	독시싸이클린
17	'25.9.30.~'26.9.29.	과·채가공품(냉동제품)	베트남 (7개 제조업소)	세균수

법령 등 개정 사항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제2025-403호, '25.9.17., 의견조회중 '25.10.13.까지)

1. 개정 이유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식품원료인 알룰로오스의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등 제조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였고(공고 제2024-585호, 2024.12.24.), 그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정(안)이 수정됨에 따라 이를 다시 행정예고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3]

-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식품원료(알룰로오스)의 기준 명확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중 2. C000500을 다음과 같이 한다.

C000500	알룰로오스*주1	알룰로스, D-allulose, 싸이코오스, D-psicose	-	-	과당류를 알칼리화 또는 효소적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제조과정에 사용된 미생물은 최종제품에 잔류하지 않아야 함

* 주1. 이 원료의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또는 효소제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해당 원료 인정 당시의 제조용 미생물이거나, 위 고시에 따라 효소제로 인정된 것에 한한다.

** 우리 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 가능

알려드립니다

◆ 수입축산물 기준 신설·강화에 따른 정밀검사 알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제2025-56호, 2025.8.26.)에 따라 수입 축산물에 대한 기준 신설·강화 정밀검사 적용 대상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주요 내용

-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으로 '페나세틴'이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목록에 추가
- 시행일: 2025.10.1.(수입 식품은 선적일 기준 적용)

<상세 내용>

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 3. 8), (1) 별표 5 중 (169) 페나세틴] 삭제

1) 발암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허가를 취소한 **'페나세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 함에 따라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

<개정 전>

(169) 페나세틴(Phenacetin) : 비스테로이드성항염증제

◎ 잔류물의 정의 : Phenacetin

소근육	0.01	돼지근육	0.01	말근육	0.01
양근육	0.01	염소근육	0.01	사슴근육	0.01
토끼근육	0.01	닭근육	0.01	오리근육	0.01
칠면조근육	0.01	유	0.01	알	0.01

<개정 후>

번호	식품[1]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물질명	잔류물의 정의
21	페플록사신(Pefloxacin)	Pefloxacin
22	피리메타민 (Pyrimethamine)	Pyrimethamine
23	반코마이신 (Vancomycin)	Vancomycin
24	록사손(Roxarsone)	Roxarsone
25	아르사닐산 (Arsanilic acid)	Arsanilic acid
26	살부타몰(Salbutamol)	Salbutamol
27	스트리키닌(Strychnine)	Strychnine
28	카비마졸/티아마졸 (Carbimazole/Thiamazole)	Thiamazole
29	페나세틴(Phenacetin)	Phenacetin

* 주1. 제1.4.2) 동물성 원료와 그 가공식품에 한한다.

○ 기준규격 신설·강화에 따른 정밀검사 적용

- 동물용의약품 페나세틴에 대한 **종전 기준이 삭제**되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목록이 추가됨에 따라 **'불검출' 기준으로 적용** ⇒ **모든 축종에 대하여 기준 강화**
- 기준 강화 대상 품목: 축산물에 대항하는 **모든 식육(부산물 포함), 식용란**
- 수입축산물에 대한 적용 시점: **2025.10.1.일 선적분 부터**

◆ 2025년도 식품등 최초정밀 중점검사항목 알림(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별 검사가능항목 및 업무처리지침) - 고시개정사항 반영

○ 관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제30조[별표9] 제3호 가목 1)

○ '25년 최초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에 대한 식품 전문시험·검사기관별 검사 가능 항목이 일부 변경되어 공지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 다운로드: 첨부파일 확인

◆ 검사명령 재지정 및 해제(2025.10.22.)

가. 검사명령 재지정 및 해제 대상

1) 재지정

구분	일련번호 (최초지정일)	대상 식품	국가	검사항목	검사명령 기간
변경 (전)	제2024-14 (2021.10.22)	과자 (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 제외)	인도 (4개소)	세균수	'24.10.22. ~' 25.10.21.
	제2024-16 (2018.10.22)	베리류(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방사능 (요오드, 세슘)	'24.10.22. ~' 25.10.21.
변경 (후)	제2025-13 (2021.10.22)	과자 (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 제외)	인도 (1개소)	세균수	'25.10.22. ~' 26.10.21.
	제20254-14 (2018.10.22)	베리류(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방사능 (요오드, 세슘)	'25.10.22. ~' 26.10.21.

2) 해제

일련번호 (최초지정일)	대상식품	국가	검사항목	구분 / 검사명령 기간
제2024-15 (2020.10.22)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의 제품	중국 (2개소)	금속성이물	**해제** ('25.10.22 부터)

[붙임 1] 수입검사 뉴스레터 신청서

◇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에서는 수입 식품등 및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검사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정책메일서비스(PMS; Policy Mail Service)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책메일서비스(PMS)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수입관리과 팩스 (02-2110-081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메일서비스(PMS) 등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성명 (필수)	
2. E-mail (필수)	
3. 업소명 (필수)	
4. 관심분야(업종) (중복선택 가능)	1)수입식품( ) 2)축산물( ) 3)수산물( ) 4)위생용품( ) 5)신고대행업( ) 6)보관업(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경인식약청 수입관리과 정책메일서비스(PMS) 등 제공

※ 수집·이용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E-mail, 업소명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

(2년 주기로 재동의 안내 메일 송부, 보유기간 만료 후 자동파기)

▶ **동의 거부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PMS 등이 제공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_____(서명 또는 인)

경인지방식약청 수입관리과 전화 02-2110-8159 팩스 02-2110-0815